

5.1.10 평생교육원운영규정

제정 1999. 06. 09.
개정 2006. 10. 19.
개정 2010. 10. 21.
개정 2016. 06. 23.
개정 2016. 09. 06.
개정 2021. 11. 29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원은 초당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(이하 “본 원”)이라 칭한다.

제2조(설립목적 및 사업) ① 본 원은 지역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학생·학부모·지역주민에게 소질과 능력의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1.29.>

② 초당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6.23.>

- 가. 교양·취미 교육 <개정 2021.11.29.>
- 나. 전문교육 및 전문지도자 교육
- 다. 학점은행제도 운영
- 라. 기관, 단체의 연수 및 위탁 교육
- 마.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운영 <호 신설 2021.11.29.>
- 바. 기타 평생교육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<개정 2021.11.29.>

제3조(위치) 본 원은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초당대학교 캠퍼스에 둔다. <개정 2016. 06. 23.>

제2장 조 직

제4조(원장) ① 본 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(교직원 구성) ① 본 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6.06.23.>

② 교직원은 전담강사, 과장, 사무직원, 조교 등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16.06.23.>

③ 전담강사는 해당 교육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며 원장이 위촉한다. <신설 2016.06.23.>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본 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, 간사는 과장이 된다. <개정 2016.06.23.>

제7조(심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에 심의 의결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따른 계획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4.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8조(의결)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9조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0.10.21>

제4장 설치과정

제10조(학습기간) 본 원의 학습 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.

제11조(학습일수) 본 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(지원자격) 본 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한민국 성인남녀이면 누구나 가능하다. 다만, 특수한 특별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력·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3조(선발방법) 본 원의 학습자는 등록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과정 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한 별도의 선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6.23.>

제14조(설치과정 등) ① 본 원에 설치하는 과정과 수업 시수, 수업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0.10.21>

② 삭제 <2010.10.21>

제15조(학습비) ① 본 원이 개설한 과정에 대해 소정의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, 학습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 <개정 2010.10.21, 2016. 06. 23., 2021.11.29.>

② 학습비의 반환은 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10.10.21., 2021.11.29.>

③ 본 원은 학습장려 및 우수학생 포상을 위하여 일정 기준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<신설 2016. 06. 23.>

제16조(수료 및 수료증 교부) ① 본 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%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<별지 1>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0.21>

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

제17조(자치회)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.

제18조(학습자활동의 금지) 학습자는 본 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집단행동·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19조(포상) 학습 태도와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.

제6장 회 계

제20조(회계년도) 본 원 회계년도는 초당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21조(예산편성) ①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 해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본 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
제22조(수입원) 본 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학습비
2. 초당대학교 보조금
3. 위탁훈련 지원금(위탁훈련 시)
4. 기타 수입

제23조(회계집행) 본 원의 회계 집행에 관한 업무는 초당대학교 예산 회계 업무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이 원칙은 1999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이 원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.

<별지1> 삭제 <2010.10.21>

<별지1> <개정 2010.10.21>

제	호
수 료 증	
<p>성 명 : _____</p> <p>생년월일 : 년 월 일</p>	
<p>위 사람은 초당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.</p> <p>- 교육기간 : 20 . 00. 00. ~ 20 . 00. 00.</p>	
<p>년 월 일</p>	
<p>초당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 공학박사 ○ ○ ○ (인)</p>	
<p>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.</p> <p>년 월 일</p> <p>초 당 대 학 교 총 장 OO박사 ○ ○ ○ (인)</p>	

<별지3> 삭제 <2010.10.21>